

해하게 많은 수산자원의 보호·관리 및 번식과 관련한 항목은 수산업법의 하위 법령으로 있는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이관시키고 또한 수산자원보호령의 독자성을 인정 입법 제도화하여 수산자원보호법에 어업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다소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수산관계법령의 법집행에 통일성과 법적안정성 및 예측 가능한 어업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확고한 제재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권력을 강력히 요구하는 분야인 수산자원보호법에 국가권력을 적절히 투입하여 어업범죄에 강력 대처해야 할 것이다.

10. 선주책임제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해사법학과 문 춘 언
지도교수 정 영 석

船舶所有者責任制度는 船舶所有者가 船舶의 利用 또는 海上航行의 運送過程에서 지게 된 債務 중 일정한 要件이 갖추어진 것에 대하여 海産 또는 일정한 金額을 限度로 總責任(total liability)을 制限하는 制度로서 11세기 아말피 法典에서 최초의 근거가 나타난다.

그 후 위 제도는 1681년의 프랑스의 海事勅令을 통해 세계적으로 普及되어 委任主義, 執行主義, 船價責任主義, 金額責任主義 등의 독자적 입법형태로 존재하다가 交易增大와 더불어 涉外的 法律關係가 늘어 가면서 國際海法會(C.M.I.)를 중심으로 統一協約의 채택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가 1924年 協約, 1957年 協約 및 1976年 協約이다. 현행 우리상법이 수용한 1976년 협약은 선박소유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海上企業의 活動保護 및 海上交通安全의 確保와 海洋環境保護라는 公益優先 내지 社會正義의 具現을 표방하면서 책임제한의 주체를 선박소유자, 구조자 등은 물론, 이들의 履行補助者와 責任保險者까지 확대하고 있다.

책임제한 대상채무와 관련하여 1976年 協約은 예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여 책임의 원인을 불문하고 船上에서 또는 선박운항이나 구조활동과 관련한 것이면 모두 책임제한의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1969年의 “기름汚染損害에 대한 民事責任에 관한 國際協約”의 適用을 받는 “기름汚染損害”나 기타 “原子力損害” 등 特別法이나 다른 協約에 의하여 責任制限을 받는 경우 이를 책임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관적 배제사유로는 “不注意하게 또한 損害가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서 저지른”이라고 規定함으로써 未必의故意가 있는 경우 책임제한을 배제함으로써 책임제한을 사실상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責任限度額에 대하여 1976년 협약은 事故主義와 함께 金額責任主義를 채택하고 해난사고의 대형화로 인한 피해규모의 거대화 등에 발맞추어 책임한도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고, 최근의 1996년의 개정의정과 유류오염손해와 관련한 2000년 개정서(amendment)는 책임한도액을 대폭 상향하여 피해자보호에 한층 진일보하였다.

1976년 협약을 수용한 우리상법도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責任限度額의 算定에 있어 遞減方式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형선박은 상대적으로 책임한도액이 높고, 대형선박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불합리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책임제한의 배제사유로 들고 있는 '고의' 또는 '무모하게'라는 표현을 '故意'로 단일개념화해야 한다.

셋째,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는 船舶所有者 중심에서 벗어나 海事債權 전반을 유기적으로 규율하고 채권자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해상기업의 활동보호를 위하여 책임제한대상채권을 넓게 인정하되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保障契約 締結強制制度 또는 선주책임한도액까지의 強制保險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책임제한제도가 채권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船舶所有者 등의 배상능력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거액 損害賠償의 경우에만 責任制限을 허용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1. 한국 중소기업의 대 중국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무역학과 장운정
지도교수 유일선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진출시킬 상품, 진출할 시장 그리고 진입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진출시킬 상품이나 진출 시장을 선택한 다음 진입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입방식의 결정에 대한 절대적 패턴은 없고 진출시킬 제품 또는 진출대상 시장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된다.

1980년 후반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열렸다. 중국